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63호 2020. 10. 19.(월)

규 칙

-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----- 2

고 시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----- 15

공 고

-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 16
○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 36

회람

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0월 19일

목 포 시 장 김 종 식

목포시 규칙 제 1805 호

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자격) ① 목포시 으뜸맛집(이하 “맛집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. 단,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업소,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.

② 양도·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 이상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,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.

제3조(맛집의 지정절차 등)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선정 신청서를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맛집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 서류평가표와 별표 2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으뜸맛집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해당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1차 서류심사표는 별표 1과 2차 현장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.
- ⑤ 시장은 맛집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, 맛집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정의 재평가)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맛집에 대한 적합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별표 2의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지정 및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5조(지정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맛집 지정서 회수
2. 맛집 표지판 회수
3.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

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정증의 재교부) ① 목포시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맛집 지정의 특례)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,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으뜸맛집 지정업소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규칙 시행 전 으뜸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·관리 한다.

[별지 1호서식]

(접수번호 :)

「목포 으뜸맛집」선정 신청서

상 호 명			
소 재 지	(전 화 :)		
대표메뉴	3개 이내	업 종	예)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
대표자(성별)	(남 / 여)	(휴대전화 :)	
조리기능자 (조리책임자)		대표자와의 관계	
인증현황	☐ 모범음식점 ☐ 위생등급제 ☐ 남도음식평가 ☐ 기타 (V 표시)		
으뜸맛집 이행운동	■ 1인기준 1만원이하 단품메뉴개발이 가능합니까?		☐ 예 ☐ 아니오
	■ 입식테이블 교체 등 음식문화조성에 참여 하시겠습니까?		☐ 예 ☐ 아니오
	■ 위생복 상시착용 등 위생·친절 서비스에 상시 노력하시겠습니까?		☐ 예 ☐ 아니오
위와 같이 20 년 목포으뜸맛집 선정에 신청하며, 선정을 받은 후에는 목포시 음식관광 발전을 위하여 음식문화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서약합니다. 20 년 월 일 업소명 : 신청인 : (인) 대표자와의 관계 : 목포시장 귀하			
※ 첨부서류 1.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2. 관련사진(대표메뉴, 업소전경) 3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			

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

업 소 명			
영업신고일		영 업 면 적	
영 업 시 간		주차가능 차량 수	대
객 석	입식 석, 좌식 석	화장실 남녀분리	여 / 부

대표메뉴(1)	음 식 명		가 격	
	주 재 료			
	설 명	5줄 이내 요약		
대표메뉴(2)	음 식 명		가 격	
	주 재 료			
	설 명			
대표메뉴(3)	음 식 명		가 격	
	주 재 료			
	설 명			

제출일자 : 20 년 월 일

작 성 자 : (인)

[첨 부2]

관련사진(대표메뉴, 업소 전경)

대표메뉴 (상차림)	대표음식 (1)	대표음식 (2)
	대표음식 (3)	메뉴판 사진
음 식 점 내부사진		
음 식 점 외부사진		

[첨 부3]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· 제공 동의서

- ☐ 수집 · 이용목적 : 목포시는 「목포 으뜸맛집 선정」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· 관리하고자 합니다.
- ☐ 수집항목 : 대표자·조리사 성명, 연락처, 업소현황(주소, 연락처, 영업면적, 메뉴재료 등)
- ☐ 이용범위 : 「목포 으뜸맛집 선정」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.
- ☐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**3년**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
※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, 이 경우 선정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☐ 개인정보처리 위탁 : 목포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합니까

☐동의함☐동의하지 않음

- 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: 맛집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으뜸맛집 선정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, 이 경우 목포 으뜸맛집 선정사업에 제한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

☐동의함☐동의하지 않음

20 년 월 일

동 의 자 성 명 :

(서명/인)

목포시장 귀하

[별표 1]

「목포 으뜸맛집」 서류심사 평가표

업 소 명			
대 표 음식	(가격 : 원)	(가격 : 원)	
영업신고일	영 업 면 적		
영 업 시 간	객 석	입식 / 좌식	석

항 목	평가 기준	배점	심사결과			최종 점수	
			A	B	C		
1.결격사유	◦ 신청자격 미달업소 해당여부 ◦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,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여부 ◦ 전국 10개이상, 전라권 5개이상 프랜차이즈 업소 해당여부 ◦ 목포으뜸맛집, 모범음식점 등 지정취소 2년 이내여부	부 적 합 ☐					
2.역 사 성	◦ 우리지역만의 특화메뉴, 업소 차별성 해당여부 ① 우수 : 20점 ② 보통 : 18점 ③ 미흡 : 15점	20	20	18	15		
	◦ 지역 내 영업연수 기간 ① 10년이상 : 10점 ② 5~9년 : 8점 ③ 2~4년 : 6점	10	10	8	6		
3.대외인증	◦ 모범음식점, 남도음식명가, 위생등급제 지정 등 ① 해당 : 10점 ②,③ 미해당 : 0점	10	10	0	0		
4.적 극 성	◦ 으뜸맛집 시책 참여도 - 1인기준 1만원이하 단품메뉴개발 의사 - 업소내 30%이상 입식테이블 교체 의사 - 친절·위생 서비스를 위한 상시 노력 의사 ① 3개 : 30점 ② 2개 : 25점 ③ 1개 : 20점	30	30	25	20		
5.고객추천	◦ 시민, 관광객 등의 인지도 (전체 득표수에 따라) ① 상위 5% : 30점 ② 30% : 25점 ③ 65% : 20점	30	30	25	20		
총 점		100	100	76	61		
평가점수 합계							점
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☐ 부 적 합 ☐							

심사위원 : 성명 (서명 또는 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성명 (서명 또는 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확 인 자 : 목포시 관광과 맛의 도시팀 성명 (서명 또는 인)

[별표 2]

「목포 으뜸맛집」 현장심사 평가표

업 소 명		영업연수	
대 표 자		대표메뉴	

평가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	심사결과			최종 점수
			우수	보통	미흡	
1. 맛		40				
	①향, 식감 등 대표음식의 맛	20	20	15	10	
	②대표음식의 창의성 및 특이성	5	5	3	1	
	③지역특산물, 신선한 재료 등 식재료 활용의 능숙성	5	5	3	1	
	④그릇 등 상차림 구성 적정성	5	5	3	1	
	⑤반찬류의 맛과 가짓수 적정성	5	5	3	1	
2.서 비 스		15				
	⑥방문고객 접점부터 배송까지 서비스 표준화 정도 - 맞이, 안내 및 주문, 서빙, 추가주문, 결제, 배송 등 응대	5	5	3	1	
	⑦고객 불만(요청)사항 등 조치법	4	4	3	2	
	⑧예약관리 시스템 운영	3	3	2	1	
	⑨식당규모 대비 주차시설 확보	3	3	2	1	
3.위 생		15				
	⑩주방바닥, 환기구 등 조리장 관리 적정성	5	5	3	1	
	⑪화장실, 내부 집기·비품 등 내·외관 청결	4	4	3	2	
	⑫위생복·위생모 착용 등 종업원의 위생관리 상태	3	3	2	1	
	⑬개인용 식기 제공	3	3	2	1	
4.향 토 성		15				
	⑭향토식재료 및 향토스토리의 활용성	8	8	7	6	
	⑮목포음식 고유의 특성 해당 여부	7	7	5	3	
5.분 위 기		10				
	⑯조명, 온도, 소음, 환기 등 쾌적한 실내 분위기	5	5	3	1	
	⑰음식과 업소 내·외관, 간판 등의 조화	5	5	3	1	
6.영업철학		5				
	⑱영업주의 음식에 대한 신념	5	5	3	1	
총 점		100	100	68	36	점

심사의견

-메뉴구성, 맛 등
-맛집 적합조건 등

심사위원 : 성명
성명

(서명 또는 인) 성명
(서명 또는 인) 성명

(서명 또는 인)
(서명 또는 인)

[별지 2호서식]

목포 으뜸맛집 지정증

업 소 명			
대 표 자		생년월일	
영업형태		전화번호	
소 재 지			
대표메뉴			
지정내역			

위 업소를 「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으뜸맛집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목 포 시 장

[별지 3호 서식]

목포 으뜸맛집 재교부 신청서

업 소 명			
대 표 자		생년월일	
영업형태		전화번호	
소 재 지			
대표메뉴			
재교부사유			

위 업소를 「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시행규칙 제6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목 포 시 장

[별표 3]

으뜸맛집 지정표지판(제3조 제4항 관련)



[별표 4]

목포 으뜸맛집 선정기준(제3조제4항 관련)

배점순위	평 가 항 목	비 고
1	음식이 맛있는 업소	
2	향토이야기 및 지역특산물 등 식재료 활용에 능숙한 업소	
3	메뉴 및 분위기, 상차림구성 등 차별화된 업소	
4	위생상태 및 친절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	
5	우리시 음식문화조성에 실천 의지가 있는 업소	
6	대중에게 인지도 있고, 역사성이 있는 업소	

목포시 고시 제 2020-284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9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1	이로로4번길 17	2020.10.16.	건물멸실
2	청호로118번길 7	2020.10.16.	건물멸실
3	청호로118번길 9	2020.10.16.	건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2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목포시 공고 제 2020 - 1588호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건축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9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『건축법』, 『건축법 시행령』 개정 및 『건축물관리법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(안 제4조)
-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명 변경(안 제24조의 2, 제24조의 3)
-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점검기준 신설(안 제24조의 4)
-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(안 제33조 제6항)
-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·관리 규정 개정(안 제34조)
- 주거용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 기준 개정(안 제36조)

○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신설(안 제36조의4)

○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신설(안 제36조의5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5. 관계법령

○ 건축법, 건축법 시행령, 건축물관리법

6. 관련부서 의견

○ 규제대상(기획예산과) : 의견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의견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의견없음

7. 예산 수반사항 : 붙임참조

8. 입법예고 기간 : '20. 10. 19. ~ 11. 9 (22일간)

9. 사전협의 사항

○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촉구

【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제6571호(2020. 4. 17),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 제295호(2020. 1. 28),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제21618호(2019. 12. 30)】

[붙임 1]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 중 “또는 대수선하는” 을 “하는” 으로 한다.

제24조의2 중 “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” 를 “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” 로 한다.

제24조의3의 제목 “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” 를 “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” 로하고, 제1항 중 “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” 을 “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” 로, “수시 점검” 을 “긴급점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시점검” 을 “긴급점검” 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4(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)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 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으로 한다.

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중이용 건축물

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

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.

제3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(쌈지공원) 형태로 설치할 것.
2.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,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
3. 최소폭은 4미터 이상일 것
4.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것
5. 조경·긴의자·파고라·시계탑·분수·야외무대(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
6.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(안내도 포함)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
7.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(별지 제3호 서식)을 제출하고,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.

1.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
2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
3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4.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5.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

②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·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.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
1.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: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
2.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: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
3.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: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

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)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다음과 같다.

1.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: 100분의 70

2.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: 100분의 80

3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: 100분의 90

4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: 100분의 60

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,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(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.

제36조의3(이행강제금의 감경)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“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최고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

2.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
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거주하는 건축물

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제36조의4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(이하 “건축안전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

2.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

4.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

5.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

6.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6조의5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
2.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·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
3. 그 밖의 수입금

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
2.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·점검 비용
3.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
4.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·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·검사·업무대행 비용

별표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제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6조 내지 제3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■ [별표 5] <신설 2020.00.00.>

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(제34조)

1. 표기 내용

가. 안내문: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

(“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(쉼터)입니다.” 등)

나. 배치도: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

다.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

2. 설치 규격: 0.5제곱미터(㎡) 이상

■ [별지 제3호서식] <신설 2020.00.00.>

관리번호

-

공개공지 관리대장(제34조 관련)

1. 공개공지 현황

위 치		목포시 로 (○○ 동) (번지)				
건 물 명				사용승인일		
건 축 물 기본정보	대 지 면 적	m ²		연 면 적	m ²	
	건 폐 율	%		용 적 륜	%	
	층 수	지상	층	주 용 도		
		지하	층			
	건 축 물 기 준 완 화 내 용	용적률 완 화				
		높이 완화				
		기 타				
	건 축 주				연 락 처	
	설 계 자				연 락 처	
	시 공 자				연 락 처	
공개공지 기본정보	면 적		m ²		유 형 ¹⁾	
	조 성 시 설	휴 게 시 설	조 경	□설치(개소) □미설치 설치면적 m ²	벤 치	□설치(개) □미설치
			테이블	□설치(개) □미설치	파고라	□설치(개) □미설치
		기 타 시 설	조 명	□설치(개) □미설치	기타시설 ²⁾	□설치(개)
	안내 표지판		설치 방법	□부착형(건물벽, 바닥, 시설물에 부착) □스탠드형(독립된 표지판)		
	감 리 자 ³⁾		○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로서 건축허가 시 공개공지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 감리 건축사 (인)(사무소명 :)			
공 개 공 지 배 치 도 ⁴⁾						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)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,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·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(재축·증축·개축에 한한다)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. 1. ~ 6. (생략) 7.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	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하는 ----- -----
제24조의2(건축물의 유지관리)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	제24조의2(건축물의 유지관리)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4조의3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)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	제24조의3(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) ① -----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----- ----- 긴급

시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·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8조의2(실내건축) 법 제52조의 2에 따라 정하는 검사 주기는 년 1회로 한다.

<신 설>

제33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⑤ (생략)
⑥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

점검-----
-----긴급점검
-----.

② ----- 긴급점검 -----

-----.

제24조의4(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)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제1호 단서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으로 한다.

제28조의2(실내건축) ①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중이용 건축물

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

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3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

한 특별법」 제53조의 특례조항으로
주상 복합건물(공동주택을 갖춘 복
합형 상가건물)의 높이의 범위는 인
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각방향으
로 4배 이하로 한다.

제34조(공개공지 확보) ① (생 략)

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
공지에는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공
중이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, 벤치,
조경시설 및 조명시설 등의 편의시
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삭 제
2. 삭 제
3. 삭 제
4. 삭 제
5. 삭 제

<신 설>

한 특별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
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
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
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
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물을
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
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
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
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
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.

제34조(공개공지 확보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④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
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
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
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
루는 소공원(쌈지공원) 형태로 설
치할 것.

③·④ (생략)
제36조(이행강제금) ① 법 제80조제1항
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
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2.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, 1개소의
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
3. 최소폭은 4미터 이상일 것
4.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
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것
5. 조경·긴의자·파고라·시계탑·
분수·야외무대(지붕 등 기타 시설
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
한한다)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
시설을 설치할 것
6.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의 설
치기준에 따라 안내판(안내도 포
함)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
7.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
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
청시 공개공지 관리대장(별지 제3
호 서식)을 제출하고, 시장은 유지
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·관
리하여야 한다.

②·③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제36조(이행강제금) ① 연면적 60제곱
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
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
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
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
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
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

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“건축 조례로 정한 경우”란 별표 3 제2호 중 위반 건축물란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되 총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.

④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한다.

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.

1.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

2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

3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
4.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
5.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

②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·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.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<신 설>

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
1.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:

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

2.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

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: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

3.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:

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

<신 설>

제36조의2(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)

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다음과 같다.

1.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:

100분의 70

2.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:

100분의 80

3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:

100분의 90

4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

: 100분의 60

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

“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임대 등 영

<신 설>

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,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(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.

제36조의3(이행강제금의 감경)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“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최고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

2.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
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거주하는 건축물

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36조의4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(이하 “건축안전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

<신 설>

2.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
 3.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
 4.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
 5.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
 6.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6조의5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일반회계로 부서의 전입금
 2.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·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
 3. 그 밖의 수입금
-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
 2.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·점검 비용
 3.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

- 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
4.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·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·검사·업무대행 비용

[별표 3]

이행 강제금 산정 기준(제36조 관련)

1.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

위 반 건 축 물	해당법조문 (건축법)	이행강제금의 금액
1.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	법 제14조	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
2.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	법 제55조	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
3.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	법 제56조	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
4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	법 제19조	시가표준액(용도변경 부분)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
5.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	법 제22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
6. 유지·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	법 제35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7.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	법 제46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
8.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	법 제48조 제1항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9. 피난시설, 건축물의 용도·구조의 제한, 방화구획, 계단, 거실의 반자 높이, 거실의 채광·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	법 제49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10.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	법 제50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
11.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	법 제51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2.5에 해당하는 금액

위 반 건 축 물	해당법조문	이행강제금의 금액
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<삭 제>

	(건축법)	
12.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	법 제52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13.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	법 제60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
14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	법 제61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
15. 건축설비의 설치·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	법 제62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
16.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	법 제20조 등	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

2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

위 반 건 축 물	해당법조문 (건축법)	이행강제금의 금액
1.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	법 제22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
2. 대지 안의 조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	법 제42조	시가표준액(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)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3.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	법 제60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
4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	법 제61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
5.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	법 제83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6.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	법 제19조 제3항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7.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	법 제20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8.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	법 제21조	시가표준액의 100분의1.5에 해당하는 금액
9.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	법 제79조 등	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

<신 설>

<신 설>

[별표 5]

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(제34조)

1. 표기 내용

가. 안내문: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

(“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(쉼터)입니다.” 등)

나. 배치도: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

다.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

2. 설치 규격: 0.5제곱미터(m²) 이상

[별지 3]

관리번호

공개공지 관리대장(제34조 관련)

1. 공개공지 현황

위 치		목포시 로 (○○동) (번지)			
건물명		사용승인일			
건축 기본정보	대지면적	㎡	연면적		
	건축면적	㎡	용적률		
	층수	지상	층	무용도	
		지하	층		
	건축물 기타사항	용적률 완화			
	건축물 기타사항	높이 완화			
건축물 기타사항	기타				
건축주		연락처			
설계자		연락처			
시공사		연락처			
면적		㎡	유형 ¹⁾		
공개공지 기본정보	조성 시기	조성	□설치(개소) □미설치(㎡)	번지	□설치(개) □미설치
		대입	□설치(개) □미설치	과고라	□설치(개) □미설치
		기타	□설치(개) □미설치	기타시설 ²⁾	□설치(개)
	안내표지판	설치 방법	□보통형(건물면, 바닥, 시설물에 부착) □스탠드형(독립된 표지판)		
관리자 ³⁾		○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자로서 건축주가 시 공개공지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 관리 건축사 (인)(사무소명 :)			
공개공지 배치도 ⁴⁾					

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 공고 제 2020 - 27호

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수도급수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0. 19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교육시설(유치원) ·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「수도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감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감면 신설
(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에 한정한다.)
- 수도급수조례 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제4항 조항 추가
 - ④ 제1항제9호의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 조항 추가

3. 관련 법규

- 「목포시수도급수조례」 제37조

4. 개정 조례(안)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10. 19. ~ 11. 9.(21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목포시장 (수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처 : 58724,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(남교동)

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8301), 직접방문 등

7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

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(☎061-270-35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목포시 수도급수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수도요금의 15%

9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의 15 %
(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에 한정한다.)

④ 제1항제9호의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1항제8의2호 및 같은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21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.

(지하, 관로누수)	복구내용	
	보수일시	보수업체
감면사유	☐ 옥내누수 ☐ 학교 및 유치원 ☐ 사회복지시설	

위와 같이 「목포시 수도 급수 조례」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(수용가와 관계 :

)

목포시장 귀하

- | | |
|------|---|
| 첨부서류 | 1. 옥내누수 : 누수공사사진(전,중,후)사진첨부, 수리영수증
2. 학교 및 유치원: 설립인가증
3. 사회복지시설 : 해당 증명서류
4. 수용가와 신청인이 서로 다를 경우: 관계 증명서
※ 수도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|
|------|---|